2007. 11. 02

식품산업 주요동향

출처: 2006 보건산업백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식품산업 주요동향

1) 시장동향

우리나라의 식품산업 규모를 살펴보면 매출액은 2002년 36조 3천억원, 2004년 33조 1천 8백억원이었던 것이 2005년도에는 33조 3천억원으로서 전년대비 0.5%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원료비,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향후의 전체적인 전망은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조사 통계에 의하면 2000년도 실적을 기준치 100으로 하여 생산지수를 비교했을 때 2006년도의 분기별 음식료품제조업은 전 분기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또한 음식료품제조업을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가공업 등 5개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제조업이 가장 높은 생산지수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은 기타 식품제조업이었다. 음료제조업은 1/4분기 이후 소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가공업, 곡물가공품, 전분 및 사료제조업의 경우는 분기별 변화가 거의 없었다.

가공식품의 2004년 총 매출실적은 33조 3,351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공전에서 분류하고 있는 식품 유형별 품목으로 볼 때 가공식품 중 가장 시장규모가 큰 산업은 유탕면류, 탄산음료류, 과실・채소류음료, 기타음료, 수산물가공품의 순으로 나타났다. 밀가루 유형은 2004년 4월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유형 및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었다.

2005년도 출하액을 기준으로 한 상위 20개 식품 품목의 품목별 출하동향은 유탕면류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탄산음료류, 과실・채소류음료, 기타음료, 수산물가공품 등으로서 전년과 마찬가지로 상위 5개 품목 중 음료류가 3개를 차지하였다. 또한 2004년 출하액과 비교했을 때 12개 품목이 출하액 증가를 보였으며, 7개 품목은 출하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으로는 수산물가공품이 새롭게 5위를 차지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중 전년대비 증가폭이 컸던 단일 식품 품목은 복합조미식품과 소스류였으며, 반면 전년대비 출하액이 감소된 품목은 밀가루와 기타음료 등이었다.

2005년도의 식품산업 총생산액은 약 29조 5천억원이었고, 매출액은 약 33조 3천억원으로서 매출액의 경우 2004년 대비 0.46%정도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식품산업의 생산실적을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으로 구분하여 보면 2005년도 식품의

출하액은 26조 9,340억원으로 2004년도의 27조 1,860억원 보다 0.92% 감소하였다. 식품첨가물은 출하액 6,640억원, 수출액 2억 1,900만불, 기구 및 용기・포장은 출하액 2조 8,340억원, 수출액 3억 2,100만불, 새로이 신설된 건강기능식품은 출하액 6,330억원, 수출액 4,100만불이었다.

건강기능식품은 2004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업계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는 한해였다. 또한, 신고기준의 어려움 같은 시행초기의 문제점들과 경기 침체 등 경제 전반의 문제들로 시장이 어려움을 겪었다. 2004년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변화 중 향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되는 것은 기준 규격형으로 5개 품목을 신규 고시한 것이다. 이는 녹차 추출제품, 대두단백함유제품, 식물스테롤함유제품,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 홍국제품이다.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는 2005년도에 310개소이며, 수입업소는 1,635개 그리고 유통전문판매업 등 판매업소는 42,362개소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소는 2004년 시행 초기에 시설기준 등의 미비로 허가를 받지 못한 업소 중 상당수가 2005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가담하여 2배가량 증가하였다.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2005년도 생산현황을 보면 홍삼제품이 1,119억원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알로에제품(908억원), 영양보충용식품(833억원) 등의 순이었으며, 수입현황에서는 총수입 581백만불 중 영양보충용식품이 309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스피루리나제품(96백만불), 글루코사민함유제품(42백만불), 알로에제품(34백만불) 그리고 효모제품(24백만불)순으로 실적을 보였다.

한편, 수출입에 있어서 식품 중 농수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그리고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수출입 현황을 비교하면 2000년 이후 무역수지 적자의 폭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2003년보다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5년에는 무역수지 적자폭이 전년도에 비해 49.8%증가하였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한 대표적인 사유는 국내 식품제조용 원료의 수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 기업이 중국 등 외국의 현지 공장을 설립한 후 생산된 제품을 국내로 역수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식품,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의 각각의 연도별 수입액과 수출액을 비교하여 보면 2005년도에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수입액은 수출액의 약 2.2배이며, 기구용기・포장은 1.6배 그리고, 새로이 분류된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액은 수출액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다른 것에 비해 수입의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이는 외국의 기능식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에 따르면 농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등 식품산업의 2005년도 수출실적은 총 22억 1,300만불에 달하였으며, 이중 가공식품이 73.7%, 건강기능식품이 1.8%, 식품첨가물이 9.9%, 그리고 기구용기・포장이 14.5%를 차지하였다.

가공식품별 수출 상위 품목을 보면 수산물가공품이 가장 많이 수출되었고 다음으로 설탕, 기타가공품, 김치류, 유탕면류(용기면)의 순서로 수출이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 수입식품의 품목별 수입액은 위스키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옥수수,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식품원료, 대두, 밀, 과실·채소류가공품가의 순서로 많았다. 여전히 농산물의 수입액이 상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크게 미국과 중국으로서 2004년도 순위와 같이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를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영국, 호주, 일본의 순이었다. 2005년도 수입식품의 국가별 수입액은 미국 16억 9,132만불, 중국 16억 4,066만불, 영국 8억4,664만불, 호주 4억 6,916만불, 일본 4억 1,709만불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입대상국이 이들 5개국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전망이다.

2) 연구개발동향

현재 정부의 식품산업 연구개발 지원 현황은 대학이나 정부 출연연구소 등의 기초・응용분야 지원에서 현대사회 급속한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성식품 소재 개발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액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공시기업들의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식품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정부지원액은 2003년도의 170억원에서 2004년도에는 148.3억원으로 전년대비 12.7% 감소되었으나 2005년도에는 163.4억원이 지원되어 전년도에 비해 25.1% 증액되었다. 지원과제수의 경우 2003년 이후로 해마다 감소하였으나 과제당 평균지원액은 점점 증가되어 2005년 식품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2003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개발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의 연구사업은 식품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의 생산 및 식품제조업체의 HACCP 관리시스템의 매뉴얼 구축 및 생산시설의 개선 및 위생관리강화와 GMP 생산시설 설비 권장으로 인한 표준평가방법개발과 교육교재 등이 개발되었고,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

성연구, 식품의 제조 시 사용되는 살균소독제의 사용 증가추세에 따라 살균소독제 시험방법 검토가 이루어졌다.

기업의 연구개발동향에 있어서, 식품산업 공시기업의 매출액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4년도에는 36조 622억원을 기록하였으나 2005년은 다소 감소한 34조 8,151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식품산업의 연구개발비는 2001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05년도에 1,900억원이었다. 식품산업 공시기업의 등록구분별 연구개발비 분포를 살펴보면 2005년 거래소 상장기업이 1,356억원으로 총 연구개발비의 71.4%를 차지하였고 코스닥 등록기업은 95억원으로 5.0%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공시기업은 449억원으로 23.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체 식품산업 공시기업의 등록구분별 연구개발 집약도는 2001년 이후 매년 높아지고 있다. 식품산업 10대 공시기업의 연도별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는 2001년도 이후로 매년 증가하였는데 2005년의 공시기업 연구개발비는 1,013억원이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특허동향은 KIPRIS의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2004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의 기능성식품 특허출원은 총 213건 이었으며 이중 86건의 특허가 등록 되었다. 년도 별로는 2004년에 85건, 2005년에 90건, 2006년 20건 현재까지 18건의 기능성식품에 대한 특허 출원이 되었다. 또한, 기능성식품 특허 등록은 2004년 23건에서 2005년 50건으로 증가되었으나 2006년도에는 불과 8건, 현재까지 5건이 등록되어 기능성식품의 특허등록 건수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3) 정책동향

식품위생법령의 개정은 2006년도에 개정된 식품위생법, 동법시행령・시행규칙 위주로 정리하였다. 식품위생법(2006.12.28)의 주요 개정내용은 1) 쌀 원산지의 표시의무 등 도입, 2)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제한, 3) 식품진흥기금의 용도 확대 등이다.

식품위생법시행령(2006.12.21)의 주요 개정내용은 1) 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 및 표시하여야 하는 식육의 범위를 정함, 2) 식육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이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2006.12.29)의 주요 개정내용은 1)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방법, 2)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로 보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완화, 3) 수입식품 사전확인등록의 신청 절차의 간소화, 4)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체 보관 의무의 강화, 5) 식품의 품목제조 보고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제출의 의무화, 6)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대상의 추

가, 7) 위해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이다.

건강기능식품법령의 개정은 2006년도에 입법예고한 건강기능식품법률, 동법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관련 고시 위주로 정리하였다.

건강기능식품법 입법예고안(2007.1.30)의 주요 개정내용은 1) 건강기능식품의 제형구분을 삭제함, 2)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등에게 등록한 판매원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는 판매업자가 판매원의 명부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게 하는 등 신고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 3)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 명령 요건을 국민건강상 위해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4) 영업자가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종업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거나 3월 이내에 사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5)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규격과 원료・성분 등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의 기준・규격과 원료・성분 등에 대한 안전성 및 기능성에 대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인정신청범위를 확대함, 6) 식품위생법에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식품 등의 자진회수”가 “위해식품 등의 회수”로 그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으로써 법률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함 등이다.

건강기능식품법시행령(2007.1.18)의 주요 개정내용은 1)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완화이다.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2006.11.20)의 주요 개정내용은 1)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등의 판매업 신고방식 변경, 2) 사전교육을 받기 곤란할 경우에는 사후교육도 인정, 3) 건강기능식품의 위탁제조범위를 전 공정으로 확대하고 위탁자와 수탁자의 준수사항을 정함 등이다.

동법 관련고시의 개정으로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 건강기능식품 인정에 관한 규정,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등이 개정되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2006.8.29)의 주요 개정내용은 1) 안전성・기능성의 인정과 기준・규격의 인정을 통합하여 210일의 처리기간을 120일로 단축함, 2) 본 고시의 구성체계를 네 개의 장(총칙, 인정절차, 제출서류, 평가원칙)으로 구분함, 3)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혼동을 방지하고 평가대상의 범위를 구체화 함, 4) 인정사항의 변경조항을 마련함, 5) 제출자료의 요건을 확대하고 명확히 설명함, 6) 원료・성분의 심사기준을 기준 및 규격, 안전성, 기능성 평가로 구분하고 각 평가원칙을 정함, 7) 원료・성분

의 안전성자료를 준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의사결정도 및 제출자료의 범위를 제시함, 8) 시험법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 등이다.

건강기능식품 인정에 관한 규정(2006.8.29)의 주요 개정내용은 1) 건강기능식품 인정기간(90일 → 60일) 및 검사기관(30일 → 15일)에서 검사기간 단축, 2) 신청서 및 모든 자료를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3)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 이상 복합하여 제조・생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4) 다양한 제품을 제조・생산할 수 있도록 기능성분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사항을 변경토록 개선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2006.8.29)의 주요 개정내용은 1)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고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2)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의약품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등이다.

2006년도 식품안전관리 주요시책으로는 1)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체계 확립, 2)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유통식품 등의 관리강화, 3)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 관리 강화 4)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 5) 건강기능식품의 과학적 제조・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